

NAFTA의 展望과 韓國經濟

金 世 源

NAFTA의 설립은 北美 3개국간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정·동태적 이익을 실현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NAFTA의 발전을 낙관할 수만은 없으며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기조에 있어서도 다소의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美洲 지역과 아·태지역과의 거래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NAFTA의 수립은 미국이 이제껏 추구해 온 다변주의(multilateralism)와 함께 지역주의가 하나의 국제질서의 흐름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NAFTA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가져오며, 한국의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대한 진출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특히 기업의 세계화 차원에서 기존의 전략이 혁신되어야 한다.

1. NAFTA의 意義

1992년 8월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北美 3국은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北美自由貿易協定)에 합의하였으며 동년 10월 가조인하였다. 협정은 3國內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각국정부가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1994년 1월부터 발효하였다.

1.1. NAFTA의 特徵

NA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1991년 6월 시작하여 비록 14개월만에 끝나기는 하였으나 北美 3국간 경제통합을 위한 절진적인 접근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¹⁾ 특히 가깝게는 1988년 1월 조인되어 1989년 1월부터 발효한 미국-캐나다간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NAFTA를 추진하는 데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의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양자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²⁾ 당초 멕시코의 적극적인 입장에 따라 미국-멕시코간 FTA를 취지로 하는 협상이 출발하였는데 그 후 캐나다가 이에 참여하기를 원해 NAFTA의 골격이 갖춰졌다. 또 1991년 5월 미국 의회가 신속승인절차(fast track)를 2년 연장해줌으로써 미국정부가 협상권한을 갖게 된 것은 물론이다.

(1) 예로 G.C. Hufbauer and J.J. Schott (1992, pp.3~4) 참조.

(2) 미국-캐나다간 FTA에 관하여는 J.J. Schott and M.G. Smith (ed.) (1988) 및 D.E. Nolle (ed.) (1990) 참조.

〈表 1〉 3大經濟圈의 經濟規模 (1992년)

	GDP (10억 달러)	인구 (백만명)	1인당 GDP (달러)	수출 (10억 달러)	수입 (10억 달러)
NAFTA	6,419	368	17,464	589	652
미국	5,549	253	21,961	422	487
캐나다	57	27	21,730	127	118
멕시코	283	88	3,261	39	46
EU	6,252	345	18,141	1,369	1,443
일본	3,363	124	27,141	316	238

資料 :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이로써 EU와 규모면에서 비교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역경제권이 탄생하였고 흔히 지역하듯이 국제경제가 3대경제권으로 分立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요지표의 비교를 통하여 3대경제권을 對比하면 〈表 1〉과 같다. 물론 일본은 아직껏 경제권을 형성하지 않고 있으나 EU 및 NAFTA를 비교한다면 무역을 제외하고는 소득 및 인구면에서 兩경제권이 비슷한 수준에 있다.

물론 NAFTA 역시 GATT가 협용한 지역주의를 추구하고는 있으나 같은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이라 하더라도 EU와 비교할 때 그 취지나 통합메카니즘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U는 한마디로 유럽통합의 역사과정에서 탄생한 所產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유럽전설’을 추진하는 첫 단계로서 경제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회원국간 共同市場을 형성하고 경제 전부문에 걸쳐 접근 내지는 통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역정책 및 농업정책 등 부문별로는 이미 域外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공동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EU회원국들은 경제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현재 ‘1992년 시장통합의 완결’ 계획을 끝내고 마스트리트조약에 의하여 탄생한 EU의 태두리내에서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을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경제·사회·외교·안보·정치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간 정체접근 내지는 통일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NAFTA의 경우, 경제통합의 초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단순한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다음 節에서도 보듯이 원칙적으로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3개국간 상품, 투자 및 일부서비스의 자유이동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 규정들은 이러한 ‘자유화’를 보장하고 또 운영하기 위한 부수적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여, NAFTA는 EU와 달리 회원국간 域內 ‘자유화’만을 추진하므로 각 회원국은 域外 제 3국에 대해서 상이한 무역·경제정책을 실시하므로 제 3국은 NAFTA 회원국중 가장 자유주의적 국가를 통하여

자본이나 상품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장치가 바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다. 그 이외에도 NAFTA 3개국간 상품, 자본 및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한다 하더라도 각국간 관관제도, 정책 및 조치가 다르다면 이러한 자유이동을 歪曲(distort)시킬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NAFTA의 취지가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제 공동규정의 채택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FTA는 종전의 자유무역지역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1985년의 미국-이스라엘 및 1989년의 미국-캐나다 FTA의 전례가 있기는 하나 미국과 같은 경제 大國이 최초로 3개국간 다변적 차원에서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의 유럽자유무역지역(EFTA)이 성공적으로 발전하여 1992년 EC와 유럽경제지역(EEA)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西유럽內 소규모경제들이다. 다음, 유럽,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內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비슷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수준에 있는 국가들간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NAFTA의 경우, 史上 최초로 미국 및 멕시코와 같이 상당히 대조적인 경제들간, 특히 경제선진국과 개도국간 자유무역지역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외에도 원론적으로 FTA는 상품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FTA는 그 이외에도 투자 및 일부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현상황에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NAFTA는 새로운 FTA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잘 운영된다면 共同市場과 같이 보다 발전된 통합 형태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1.2. 美國의 地域主義

한편, NAFTA의 체결을 지지하는 일부 著者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J.J. Schott(1993, p. 7)], 미국은 종전까지 고집해온 국제주의나 다변주의(multilateralism)의 추구를 포기하고 이제 지역주의도 이와 동시에 병행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域内外 국가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결국 한국과 같은 역외국가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보호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屬性으로 인하여 미국은 이제껏 지역주의를 반대해왔다.

미국이 이와 같이 다변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도 채택하는 소위 2중정책(2 track policy)을 선호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GATT에 의한 국제거래의 자유화에 대하여 실망했다는 데 기인한다. 이미 1980년대 초 미국은 GATT의 테두리내에서 UR과 같은 다변적 무역협상

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요 대상국들의 非 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실패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金世源(1993, p. 73)]. 미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GATT의 기능이 너무 理想에 치중한 나머지 국제협상과정에서 free-rider, foot-dragging 및 convoy effects 등의 결함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미국이 지역주의로 선호하였다는 사실은 특히 부시행정부의 중남미 경제외교에서도 잘 들어났다. NAFTA 계획이 발표되고 1990년 6월 부시의 EAII(Enterprise for America's Initiative) 추진과 함께 沉美洲자유무역지역을 위한 일반협정(framework agreement)이 체결되자 동 지역내에서는 지역주의의 ‘봄’이 일어났다. 1990년 11월의 ANCOM 및 1991년 3월의 아순시온협정에 의한 MERCOSUR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한편,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NAFTA의 체결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협정이 차별대우로 인하여 그만큼 對北美 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한다면 상품수출은 물론 자본·기술의 직간접적 진출을 저해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글에서는 NAFTA의 내용을 분석하고 동 협정이 해당 3개국간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종합한 후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파급을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NAFTA의 발효를 전제로 미국을 비롯한 對北美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NAFTA의 設立趣旨와 重要內容

2.1. 北美 3 國의 立場

原論이 말하여 주듯이 3개국간 자유무역의 형성과 같은 시장통합의 취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마디로 大시장을 실현함으로써 정·동태적 이익을 얻자는 데 있다. 생산의 효율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이루함으로써 새로운 분업체계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부존자원을 살피면 3개국의 경우 비교우위부문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즉 미국이 기술과 자본을, 멕시코가 저렴한 노동력을 그리고 캐나다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통합에 따르는 분업의 촉진과 함께 성장촉진의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반면, 〈表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3개국간 경제규모나 지표는 물론 상호의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은 北美 3개국의 域內 총생산에 있어서 85% 이상을,

〈表 2〉 NAFTA域內貿易 (1991)

(단위 : 백 만달러)

	미국-캐나다	멕시코-미국	캐나다-멕시코	합계
수출	85,103	31,194	425	116,722
수입	91,141	33,276	2,131	126,548
합계	176,244	64,470	2,557	243,270
구성비	72.4%	26.5%	1.1%	100%

資料 : IMF (1992).

그리고 총인구의 70% 내외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 域內 무역의 존도를 보더라도 1991년 기준 미국의 총대외무역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내외에 불과한데 반하여 이 두 국가의 대외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각각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EU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며, 또 미국이 美洲보다도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말하여 준다.⁽²⁾ 한편,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表 2〉는 NAFTA 역내무역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1.1. 美 國

이미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입장은 GATT체제에 한계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EU에 대한 협상권의 강화를 필요로 하였다.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경제적 실리의 추구와 함께 대외협상권의 강화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EAI의 실립에 착안하였고 그 일환으로 NAFTA를 추진하였다.

다음, 미국은 멕시코의 정치적 안정, 민주화의 발전 및 성장의 촉진이 곧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Salinas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일련의 경제개혁이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NAFTA의 추진은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대외개방을 촉진시킬 것으로 믿었다.

그밖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비록 멕시코의 GNP가 미국의 4% 내외에 지나지는 않으나 무역장벽의 제거에 따라 미국의 對멕시코수출증대에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와 함께, 동태적 측면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즉 NAFTA의 체결이 멕시코내 소득 및 고용기회를 증대시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견해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국내경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멕시코경제와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첨단산업중심의 특화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같은 해 32~33%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반대하는 입장도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내 NAFTA를 배척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1991년 기준 미국 및 멕시코내 시간당 임금은 각각 15.45달러 및 2.17달러로서 후자는 전자의 14%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NAFTA를 결성하는 경우 미국의 **對멕시코투자**가 가속화됨으로써 자본유출에 따라 국내 실업이 증가하고 또 임금의 **下向압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NAFTA 협정문작성에 있어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자체는 미국산업의 구조적 조정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경제적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음을 물론이다. 급속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면 멕시코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의 활용이야말로 미국으로 하여금 자본을 동원하고 첨단부문에 더욱 특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2. 1. 2. 캐나다

이미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캐나다내에서는 ‘경제주권’의 예속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G.C. Hufbauer and J.J. Schott(1992, pp. 19~20)]. 또 NAFTA의 체결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멕시코를 포함하는 FTA의 실현이 거시적·미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내 기업에게 부담을 가져온다는 생각 아래 소극적이었다. 더구나 <表 2>에서도 보듯이 캐나다-멕시코두역이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캐나다는 NAFTA의 형성과 함께 국제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누릴 수 있다는 利點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국-멕시코간 FTA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캐나다간 체결된 기존 FTA에 따르는 이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밖에 긍정적으로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내 산업구조의 조정과 특화를 촉진시키고 비교우위부문(기기류, 農林產物 등)에 있어서 상품수출 및 자본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캐나다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부문 및 정부조달 등에 있어서 **對멕시코** 진출의 확대에도 관심을 가졌다.

2. 1. 3. 멕시코

NAFTA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바로 멕시코였으며 또 구체적인 이익도 기대되었다. 우선 멕시코의 총수출에서 75% 내외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수출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기대되는데 무엇보다도 미국의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 1985년 이후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경제개혁과 안정

계획이 NAFTA의 체결과 함께 확고한 기반을 이룩할 수 있다는 利點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대외개방정책의 추구는 NAFTA에 의한 北美市場통합에 의하여 더욱 뒷받침되는데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효율성의 재고를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글으로 NAFTA의 체결에 따라 멕시코內 저임금노동을 활용하고 나아가 對美·캐나다 시장진출을 취지로 하는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미국 및 캐나다의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체는 멕시코의 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쟁력강화 및 고용창출 등에 기여함은 물론 대외채무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 1990년 현재 멕시코의 외채총액은 980억달러로서 GDP의 42%에 해당하는데 외채상환부담률도 거의 30%에 달하고 있다.

2.2. NAFTA의 重要內容

NAFTA초안은 거의 1,1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중 900페이지는 관세인하 계획을 나열하고 있다. 同립정문의 중요부문을 요약하여 本논문에 부록으로 첨부하며 여기서는 한국경시에 관심있는 내용만을 검토하기로 한다.⁽⁴⁾ 우선 NAFTA 前文은 3개국간 무역 및 투자확대와 함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를 통해 고용확대 및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명시되고 있다. 특기할 것은 환경보호와 근로조건의 개선이 강조되고 있어 환경과 노동보호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있음을 알하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클린턴정부는 선거운동기간 주장했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후속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1993년 8월 NAFTA추가협정이 타결되었다.⁽⁵⁾

NAFTA총칙은 GATT 규정에 일치하는 3개국간 자유무역지역(FTA)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NAFTA의 설립목적이 무역장벽제거, 공정한 경쟁조건의 보장, 투자기회증진, 지적재산권보호,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율적인 절차, 분쟁해결절차, 3者 지역내 多者간 협력증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2.2.1. 關稅 및 非關稅障壁의 除去

NAFTA는 종전 미국-캐나다간 FTA를 보다 개선·확대하여 1~15년 이내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지 미국-캐나다간 관세는 1989년 1월 발효된 FTA협정에 따라 3단계에 걸쳐 1998년까지 거의 완전철폐된다.

한편 멕시코의 경우 원산지조건을 충족시키는 조건 아래 4개의 상품군으로 분류하여 즉시, 5년内, 10년内 및 15년내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즉 총무역의 50%에 해당하는 품목

(4) NAFTA협정문의 原文과 함께 번역은 한국무역협회 (1992a) 참조. 또 G.C. Hufbauer and J.J. Schott (1993)은 NAFTA의 내용에 대한 해설과 함께 평가를 정리하고 있다.

(5) The Economist (1993, August 21-27)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에 대하여는 즉시, 15%의 경우 5년이내 철폐되며 잔여 섬유, 의류 및 신발류등 소위 민감 품목의 경우 10~15년간에 걸쳐 철폐된다.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5년 이내 3개국간 관세가 철폐된다.

또 현재 NAFTA域內 총무역의 30~50%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수량제한, 反dumping, 수입 허가제도 및 상쇄관세를 비롯한 非관세장벽에 있어서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우 협정발효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제거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협정안의 발효와 함께 관세 워터⁽⁶⁾ 또는 일반관세로 전환되며 단계별로 철폐된다. 농산물무역의 자유화는 NAFTA의 내용중 상당히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2.2. 原產地 規定(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의 취지는 한마디로 NAFTA 域內 특혜대우를 강화하고 따라서 域外상품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즉 역외 제3국 상품이 NA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NAFTA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의 한 축면을 말해주는 부정적인 先例로 지적되고 있다[G.C. Hufbauer and J.J. Schott (1993, pp. 5~6)].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미국式의 '稅番(tariff heading)변경'을 채택하였으나 자동차를 포함하는 일부 중요품목에 대하여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기준(역내부품조달비율)까지 추가시키고 있다. 한 예로 NAFTA 협상에 있어서 3국간 첨예하게 대립을 보인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캐나다간 FTA에서 규정된 50%를 더욱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즉 현지부품조달 비율에 있어서 협정발효 이후 4년에 걸쳐 57%로 인상된 후 다시 4년만료와 함께 62.5%로 최종인상된다.

섬유 및 의류의 경우에 있어서 역시 원산지 규정은 상당히 엄격하다. 품목에 따라 상이 하나 원칙적으로 北美에서 생산된 原絲나 직물을 사용해서 제조된 경우 무관세의 혜택이 허용된다. 그 이외 역내공급이 부족한 견직물 및 특정內衣직물에 있어서는 稅番변경에 더하여 가공기준을 추가하고 있다. 또 철러 TV 및 컴퓨터의 원산지 규정 역시 주요공정기준에 부가가치기준을 명행하고 있다. 즉 北美產 부품을 사용하여 稅番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域內에서 부가가치가 최소한 50% 이상 창출되어야 한다.

2.2.3. 서비스

미국-캐나다간 서비스시장의 자유화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금융, 전기통신, 도·소매업 등 150여종에 달한다. 그 내용은 내국민대우, 국경을 초월한 규정의

(6) 일정한도의 워터한도내에서는 무관세의 혜택을 주는 제도임.

명료화 등으로서 미국의 주장이 거의 반영되었다.

한편, 멕시코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비스부문별로는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 예로 멕시코내 금융산업에 대한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산업개발에 있어서 일정기간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은행의 멕시코 시장점유율을 협정발효 이후 1년내 8%로 제한하고 2000년까지 매년 1%씩 증가시킴으로써 1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외 증권 및 보험업에 있어서는 보다 자유화의 속도가 빨라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제한조치가 철폐된다.

2. 2. 4. 政府調達 및 投資

정부조달부문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域內 재화, 서비스 및 건설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개방하게 된다. 정부조달의 범위는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는 5만달러 이상, 건설서비스는 650만달러 이상이며, 국영기업의 경우 그 대상에 따라 각각 2.5만달러 및 8백만달러 이상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하기로 확정하였다.

한편, 투자자유화에 있어서 미국 및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간 논란을 빚었으나 예외를 인정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즉 회원국간 상호투자에 있어서 수출이행수준, 자국산 부품조달비율, 국산품우선사용, 무역수지균형, 기술이전의무 등 제한을 가할 수 없다. 단지 원자력, 석유, 가스, 기초석유화학 및 정유부문에 있어서는 멕시코정부의 독점권이 인정된다.

2. 2. 5. 緊急輸入制限(safeguard)

수입시장의 개방에 따라 회원국내 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즉 협정발효후 3년 과도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미 인하 또는 철폐된 관세를 환원 할 수 있다.

2. 2. 6. 知的所有權 및 環境保護

지적소유권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장이 크게 반영되었다. 각국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집적화로(IC) 등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 환경보호에 있어서는 특히 회귀동식물의 보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유해폐기물 등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나아가 3국은 협정발효후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표준위생 및 검역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 7. 反덤핑 및 相殺關稅法運營 및 貿易紛爭

해당국간 독립적인 패널을 설치하여 반덤핑 및 상쇄관세부과 이전에 문제점을 검토한다.

그 이외 협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당사국의 장관급인사로 구성되는 두역위원회(Trade Commission)와 실무를 전담할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3. NAFTA와 北美經濟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北美 3국간 경제거래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미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대외거래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이 두 국가의 對美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한마디로 미국중심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AFTA가 1994년 1월부터 발효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러한 거래행태에 영향을 주고 또 域內거래가 보다 집중화되는 경향을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캐나다간 이디 FTA가 발효중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거래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 두 국가와 멕시코간의 거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캐나다간 FTA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同협정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고 또 NAFTA에 관한 논의를 계기로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각 著者마다 상이한 모델의 기본가정에 따라 試算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복잡한 협정문에 포함된 거래자유화 및 관련규정들을 다 고려한 적·간접적 효과를 동태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하나의 전망을 제시해주는 지침으로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한 예로 USITC의 ‘일반균형측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접근에 의한 試算을 요약하면 〈表 3〉과 같다.

〈表 3〉에서는 가정에 따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기 위하여 가장 현실적인 案안을 하나씩 추려보았다. 이 表에서도 볼 수 있듯이 著者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NA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 비교하여 대부분 GDP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무역수지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록 자본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역장벽의 제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자원재분배 재고의 효과를 통하여 소득증가에 기여한다. 또 멕시코의 자본유입을 가정한다면(同表에서는 비교를 생략하였으나) 그만큼 멕시코의 소득증가 및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단지 알몬(Almon)에 의한 동태분석은 멕시코의 경우 다같이 負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자본유입의 효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

〈表 3〉 NAFTA締結의 3국에 대한 實質 GDP 및 貿易收支效果 (단위 : %)

	미 국		캐나다		멕시코	
	실질 GDP	무역수지	실질 GDP	무역수지	실질 GDP	무역수지
Bachrach & Mizrahi ¹⁾	0.04	0.07	NA ⁵⁾	NA	4.64	59.12
Hinojosa & Robinson ²⁾	0.1	NC	NA	NA	6.8	NC
Ronald-Holst et al ³⁾	2.07	NC	10.57	NC ⁶⁾	3.38	NC
Almon ⁴⁾	0.17	18.4	NA	NC	-0.35	-9.41

註 : 1) 1988년 기준, 일반적인 무역자유화효과와 멕시코의 차본스톡증가 가정

2) 관세 및 비관세철폐, 대내시코 차본유입과 이민가정

3) 1988년 기준, 규모수익체중(IRTG), 경쟁시장, 관세 및 비관세철폐가정

4) 10년후의 관세 및 비관세철폐 효과

5) NC : 불변가정

6) NA : 해당사항 없음.

資料 : USITC (1992).

다는 점 이외에도 당초 높은 무역장벽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멕시코를 포함하는 NA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著者들이 미국-멕시코간 FTA의 효과에 관심을 갖았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表 4〉와 같다.

여기서 인용되는 諸모델은 각각 기본가정들을 달리하고 또 캐나다를 포함하지 않고 미국-멕시코간 FTA를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결론은 양지역 간 수출이 추가적으로 증대한다는 사실이며 이는 무역장벽의 제거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임금상승률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같이 상승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연구기간에 따라 커다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임금 및 고용에 관한 시각은 미국내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한편, 무역수지의 경우 총체적인 대외무역동향을 반영하므로 2국간 무역장벽의 철폐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의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총체적으로 볼 때 각 모델이 갖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NAFTA의 체결에 따라 해당 3국의 거시경제성과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았으나 각 부문별로 보더라도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NAFTA의 체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국가는 멕시코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경제주권의 문제가 제기 되기는 하나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한다면, 경제적 자유화·대외개방을 포함하는 경제개혁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외국의 자본·기술·경영 노하우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제활성화가 촉진됨은 물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表 4〉 美國-멕시코 FTA의 效果¹⁾

(단위 : 10억 달러)

분석기관		IIE	Almon	KPMG	Berkeley	Baylor	Michigan-Tufts	El Colagio
미국	對멕시코수출	16.7	8.5	1.2	2.3	6.9	4.2	3.4
	域外수출 ²⁾	0	0.2	1.6	0.2	NA	-1.0	NA
	무역수지	9	6	-1.1	0	1.8	-0.3	2.1
	純고용창출(천명)	130	4.4	0	-234	NA	0.0	0.0
임금변동(%)		0	0.02	0.03	0.4	0.01	0.10	NA
멕시코	對미국수출	7.7	2.7	3.9	2.5	5.1	3.5	1.3
	域外수출 ²⁾	-3	3.1	1.3	-0.2	NA	0.5	-1.3
	무역수지	-12	-2.7	4	0	-1.8	-0.2	0
	純고용창출(천명)	609	-158	1,464	273	NA	0.0	0.0
임금변동(%)		8.7	NA	0	2.27	NA	2.90	16.0

註 : 1)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모델을 제외한 계량적·CGE모델은 관세 및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가정하고 있음. 반면 IIE모델은 전두익장벽의 철폐에 더하여 멕시코의 에너지정책 자유화를 포함하는 경제정책의 개혁까지를 고려하였음. 가격은 1988년 혹은 1989년 불변가격임. IIE모델에 있어서 임금은 폐소의 실질가치산수를 감안하였음. 그 이외 각 모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음.

2) 域外라 함은 미국 및 멕시코를 제외한 그 이외 국가들임.

資料 : G.C. Hufbauer and J.J. Schott (1992, pp. 58~59)에서 재인용.

4. 韓國經濟에 대한 派及

4.1. 對北美輸出

北美 3개국이 한국의 총대외수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表 5〉에서도 보듯이 1980년대 중반 44%까지 도달한 후 매년 하락하여 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對美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 대한 수출이 다소 하락하는 반면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확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두 국가가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NAFTA의 체결에 따른 일차적인 관심은 한국의

〈表 5〉 韓國의 對 NAFTA 貿易趨移

(단위 : % 단위)

	1986	1988	1990	1991	1992
총 수 출	347 (100)	607 (100)	650 (100)	719 (100)	766 (100)
北 美	152 (43.9)	234 (38.5)	217 (33.3)	210 (29.2)	207 (27.0)
미 국	139 (40.0)	214 (35.3)	194 (29.8)	186 (25.8)	182 (23.8)
캐 나 다	12 (3.6)	17 (2.8)	17 (2.7)	17 (2.3)	16 (2.1)

註 : 1) () 내는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

資料 : 무역협회, 『수출통계』.

〈表 6〉 重要諸國의 美國市場占有率 變化

(단위 : %)

	EC	캐나다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멕시코
1988	19.3	18.5	20.3	5.6	4.6	1.9	5.3
1989	18.0	18.6	19.8	5.1	4.2	2.5	5.8
1990	18.6	18.5	18.1	4.6	3.7	3.1	6.1
1991	17.7	18.7	18.8	4.7	3.5	3.9	6.4

資料 : OECD, *Monthly Statistics of Foreign Trade*.

對美수출경쟁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미국-캐나다간 FTA가 발효할 1989년 당시만 하여도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 두 국가간 이미 경제적 상호의존이 높고 또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同 FTA가 域內 무역의 증가를 가져오는 소위 무역창출효과가 클 것이라는 결론 때문이었다. 그러나 NAFTA의 성립은 한국경제·산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멕시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즉 정태적인 측면에서 NAFTA를 계기로 미국이 멕시코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 따르는 효과가 한국-멕시코간 생산비 차이보다 크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만큼 한국산은 텍시코산에 비하여 경쟁력면에서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한국의 對美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表 6〉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역외국들이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다소 확대되고는 있으나 멕시코의 경우에 비하여 그 속도는 뒤지고 있다. 물론 중국의 경우 低價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경쟁력으로 인하여 예의를 보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한국-멕시코, 대만-멕시코 및 홍콩-멕시코간 對美수출경합도를 비교하면 90년의 경우 한국-멕시코간 同지수는 50.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⁷⁾ 이와 같이 수출경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상품의 가격상승에 따른 일반적인 경쟁력 약화와 함께 NAFTA의 결성으로 인하여 경쟁여건은 더욱 불리하게 된다. 한 보고서는 [金尙謙(1993)] 한국의 대미수출품中 上位 50개 품목에 대하여 NAFTA에 따른 관세인하효과를試算한 결과 멕시코가 약 4억 4백만달러의 對美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 3천 5백만~5천 3백만달러에 해당하는 수출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예측 자체가 갖는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예로 비관세장벽을 비롯한 일반적

(7) 팅거(Finger)와 크레이닌(Kreinin)의 수출경합도지수모델을 사용하였는데 1990년 대만-멕시코는 44.19 그리고 홍콩-멕시코는 34.52로 나타났다.

인 무역장벽의 제거나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 반면, 미국의 소득증가에 따르는 對韓수입증가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제외되었다.

이상은 일반적인 무역동향을 기초로 한 효과인데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보다 미시적으로 品目別로 살피면 NAFTA의 파악은 상당히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가 섬유, 신발 및 家電製品 등 소위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아직도 높은 관세·비관세장벽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2. 一般的 效果

다른 한편, NAFTA의 체결에 따라 멕시코內 자본 및 기술유입의 효과도 수반되는데 진출국은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시장의 확대를 의식한 일은 및 EU제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NAFTA의 실현이 예상된 1991년 현재 멕시코內 新規의 국인투자는 46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28%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별 累積투자총액은 미국(21.7억 달러), 독일(20.4억 달러) 및 영국(19.8억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北美 3국에 대한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총액은 현재 다음과 같다.

〈表 7〉 韓國의 海外直接投資現況(1993. 6월 현재)

(단위: 백만 달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전 수	금 액
광업	7	48.6	2	66.1	0	0
임업	2	1.3	0	0	0	0
수산	12	23.7	1	0.9	1	0.1
제조	127	588.3	11	324.4	7	11.3
건설	17	33.2	0	0	0	0
운수·보관업	13	11.1	0	0	0	0
무역	265	676.6	13	12.6	1	1.2
기타	65	227.5	3	2.8	0	0
부동산	9	12.8	1	0.4	1	0.3
계	517	1,628.1	31	407.2	10	12.9

資料：한국은행 (1993).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직까지 미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멕시코에 대하여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NAFTA와 같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중의 하나가 자본·기술의 진출이라고 한다면 현재 비교우위의 생산요소(예로 노동)나 大市場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멕시코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요청된다. 물론 원산지규정과 같은 제약이 있기는 하나 나중에도 설명하는 바와 같이 협정법인의 설립과 같은 적절한 전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NAFTA의 설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정적인 파급으로서 무역을 비롯한 경제거래의 전환효과(diverting effect)를 예상할 수 있다. NAFTA의 위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회원국간 무역장벽의 제거, 원산지규정, 환경규제 및 노동조건의 강화 등은 한국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하여 北美에 대한 상품 및 자본진출 등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진출에 있어서 멕시코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편, 무역창출효과나 동태적인 효과는 北美3국내 경제적 활력을 가져옴으로써 한국의 북미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또 멕시코內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한국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멕시코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차원에서는 멕시코의 수입수요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끝으로, UR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 이제 WTO체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NAFTA체결에 따르는 부정적인 파급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NAFTA의 많은 부분이 UR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다변주의의 원칙에 따라 3국간 서로 제공하는 특혜의 일부 내용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5. 產業別 影響과 韓國의 對應⁸⁾

국내 관련산업계의 총체적인 반응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즉 NAFTA의 체결에 따라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미국내에서 멕시코產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한편 北美市場의 확대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對美수출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內 자본·기술진출의 확대를 통하여 미국 및 캐나다시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결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론적인 시각에서 국내 관련기업들이 NAFTA체결을 예상하여 일부 전략을 강화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하 종요산업별로 NAFTA의 파급과 대응전략을 종합하고자 한다.

(8) NAFTA가 한국의 산업별로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많은 자료가 출간되었으나 특히 다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한국무역협회 (1992b), 한국무역협회·산업연구원 (1992), 대한무역진흥공사(1992), 한국수출입은행 (1992b).

5.1. 電氣・電子產業

NAFTA는 대부분의 전기·전자 및 동부품관세를 1994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키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통제품에 대한 명목 평균관세율은 CPT(15%)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3~10%에 위치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는 VCR 10%, 퀼터 TV 20% 및 CPT 15%를 비롯하여 대부분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특히 전자제품의 90% 정도가 마킬라도라(Maquiladoras) 지역에서 생산되므로 이 지역에서 창출된 누가가치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므로 멕시코산에 대한 실질관세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산의 불리한 측면은 복잡한 원산지규정에 있다. 예로, 멕시코산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관세·비관세장벽의 적용상 혜택을 받으려면 CTV(14인치)의 경우 처음 5년간 北美產 CPT를 사용해야만 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는 각종 누가적인 장치들(예로 intermediate frequency amplifier, video amplification, detection, tuner 및 power supply 등)의 北美產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슷한 의무규정이 그 이외 제품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의 對美수출이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아 왔으나 종·장기적으로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용책으로는 우선 국내에서 기술개발의 촉진과 함께 자동화·정보화의 추진은 물론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음 對北美진출에 있어서도 종전의 생산체계를 바꾸어 日本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조립공장위주에서 탈피하여 부품·소재생산중소기업도 멕시코내 동반진출하여 현지 부품조달비율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2. 自動車 및 同部品產業

한국산자동차는 그간 노동쟁의, 임금 및 금융비용상승 등으로 인하여 이미 멕시코산에 비하여 경쟁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 결과 1989년 이래 멕시코의 對美수출이 한국을 상회하고 있는데 90년 이후 미국내 수입시장점유율이 한국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승용차 및 대부분 자동차부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2.5% 및 3.1%이나 1994년부터 철폐된다. 경트럭의 경우 25%의 현행 관세율은 1994년 10%로 그리고 그후 점차 철폐된다.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 및 同 부품에 있어서 적용되는 관세율은 10~20%인데 대부분 1994년 10%로 인하되고 그후 5~10년에 걸쳐 단계별로 철폐된다.

NAFTA의 체결과 관련하여 한국의 北美, 특히 미국시장진출이 단기적으로 큰 장애를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엄격한 원산지규정 및 관세환급제의 철폐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장을 받게 된다. 자동차 및 同부품에 있어서 北美產부품조달비율이 품목에 따라 60~65%로

상향조정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다. 또 부품에 있어서 현재 적용되는 관세환급제도 역시 2001년에 이르러 철폐됨으로써 한국산은 미국이나 멕시코에 비하여 크게 불리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하는 이른바 수직분업체제의 형성이다. 이미 멕시코정부는 1989년 12월 제정된 ‘자동차에 관한 新法令’에 따라 생산량을 2배(약 9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이 전형적인 다국적 기업의 예로서 생산의 세계화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요청된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경쟁력의 강화를 통하여 현지생산 및 부품의 해외조달을 위한 세계화전략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더구나 제품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신제품개발 및 特化와 함께 對멕시코 투자확대에 의한 미국 및 캐나다내 시장개발의 한 대안으로 ‘틈새시장’(niche market)의 공략에 주력해야 한다.

멕시코는 현재 자동차산업내 수직계열화를 통제하고 있어 자동차제조업체의 부품산업동반진출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또 부품업체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까다로운 법규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법인 설립과 같은 형태의 진출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5. 3. 纖維・衣類產業

미국의 관세율이 일반적으로 낮으나 섬유·의류에 있어서는 평균 17.22%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NAFTA가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산은 멕시코산과 중·장기적으로 심한 경합을 벌릴 것 같다. 단지 멕시코의 對美수출의 대부분이 이미 마킬라도라地域내 생산으로 구성되었고 또 한국의 對美수출이 쿼터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은 단기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다.

NAFTA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쿼터를 비롯한 비관세장벽을 1994년부터 10년간 점차 확대하여 철폐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멕시코 섬유제품의 경우 北美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적용된다. 또 멕시코산 어패럴은 北美產 적물을 사용한다면 1994년부터 무관세의 혜택을 받는다. 그 이외 대부분 섬유제품에 있어서 北美內에서 생산된 級나 직물을 사용할 경우 관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산 섬유·의류는 미국시장에서 멕시코보다는 홍콩,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치열한 경합관계에 있다. NAFTA의 체결에 따라 앞으로 同부문에서 멕시코가 경쟁국으로 부상될 것임에 틀림없다. 단지 당분간 멕시코는 미국에 中·低價品目的 수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나 자본·기술도입에 따라 이러한 수출패턴은 바뀌어 나갈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소재개발, 제품다양화, 디자인·패션의 제고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상품에 특화해야 한다. 또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과 최근 파데말라 및 혼슈라스 등 中美체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 멕시코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

5.4. 半導體 및 컴퓨터 產業

同부문에 있어서 미국의 현행관세율은 비교적 낮다. 예로 컴퓨터의 경우 관세분류상 총 24개 품목중 11개가 무관세의 대상이며 잔여 1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3.7~4.9%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단시일내 NAFTA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예상되지 않는다. 문제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反덤핑세 등 전통적인 장벽이며, 그 이외 NAFTA의 추진에 따른 일반적인 장벽과 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 그리고 미국 및 캐나다 등의 자본·기술유입에 따르는 경쟁력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同부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국내컴퓨터 산업의 구조개선 및 기술수준의 제고로서 이는 전반적인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高度化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對北美진출과 관련하여 하나의 과정으로서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멕시코내 각종 형태의 기업진출을 시도해야 합은 물론이다. 결국 同부문의 경우, 다른 부문들과 대조적으로 北美 개별국가보다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복합적 진출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6. NAFTA의 誕生과 國際經濟秩序의 變化

6.1. 不安한 美國의 立場

이미 지적하였듯이 NAFTA와 관련하여 미국내 여론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노동과 환경문제이다. 한마디로 미국 및 캐나다에 비하여 후진경제인 멕시코의 경우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및 저수준의 방만한 환경기준·관리의 여전 아래 있다. 따라서 3개국간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익성을 놓아 미국의 기업, 특히 제조업부문이 멕시코로 이전함으로써 자본의 유출과 함께 실업증대는 불가피하게 된다. 또 멕시코내 저임금이나 협약한 환경관리가 미국내 임금의 하향압력이나 무역수지의 악화를 비롯하여 현재 미국이 당면한 구조적인 경제곤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넣고 있다. 대통령후보였던 R. 폐로같은 일부 극단론자들은 NAFTA의 체결이 미국의 재정적자, 실업 및 稅源격감과 같은 3중 타격

을 가속시킬 것으로 주장하였다[L.A. Times(1992, Aug. 26)].

NAFTA부속협정문⁽⁹⁾에서는 클린턴정부의 약속대로 다소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특히 실업 및 환경문제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同협정문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당 회원국에 통보한 후 60일 이내 해결토록 견의하고 있다. 만약 해당국이 불응한다면 事案에 따라 2천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이외 관세나 쿼터 등의 경제적 제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원내 R.A.게파트 의원같은 NAFTA반대파들은 이러한 규정의 효력을 의심하고 있다. 즉 빅시코내 근로자의 권리(예로 파업권)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미국과의 임금격차 해소(예로 생산성 상승만큼 임금의 상승을 비롯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New York Times(1993, Sep. 19 및 21)]. 부속협정이 타결된 후 환경주의자들의 반발이 다소 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계속 불만의 의사표현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내 여론동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유·진보주의자들이 NAFTA에 대하여 찬성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노조를 비롯한 보호론자들이 시장개방·확대에 따르는 불안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전지하고 있다. 사실, 미국내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로 생산시설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NAFTA의 취지 자체가 미국내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의 제고에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하간, 클린턴정부의 노력과 함께 근소한 표 차이로 하원의 동의에 따라 NAFTA가 1994년 1월부터 출범하였으나 과거 부시정부의 경우에 비하여 또 다른 선택이 미국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클린턴대통령은 이미 G7 정상회담차 지난 7월 일본을 방문하였을 당시 '신태평양공동체' (New Pacific Community)의 형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바로 이 때문에 클린턴정부의 對 NAFTA전략이 부족하다는 일부 인론의 평가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Washington Trade Daily(1993, Sep. 22)].

클린턴의 이러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미국의 대외거래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美州보다는 오히려 아·태지역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 만약 미국이 NAFTA를 수행해 나간다면 부시정부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全美州와의 FTA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 선택이 분명해지며, 따라서 아·태지역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러한 지역주의는 아·태지역내 새로운 경제통합의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입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말레이지아의 동아시아경제회의 (East Asian Economic Caucus:

(9) 주 (5) 참조.

EAEC)와 같은 제안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특히 동북아지역내 일본에 의하여 주도되는(설사 일본이 앞장서지 않고 수동적으로 동조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주의의 움직임은 활발해질 수 있다.

또 미국은 1993년 11월 씨에틀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외경제정책이 아·태지역과의 협력강화에 비중이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앞으로 NAFTA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에 관하여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또 1995년 1월부터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다변주의(multilateralism) 체제와 지역주의 간의 조화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6. 2. 國際經濟秩序에 미치는 波及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NAFTA의 실현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파급증의 하나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의 여부이다. 다시 말하여 가까이는 EU의 ‘92년 계획’ 추진 당시 제기되었던, 다시 말하여 ‘유럽요새화’(Europe Fortress)에 따른 城外제국과의 거래에 피해를 가져오느냐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GATT에 의한 다변주의나 무차별주의와 지역주의 간兩立性과 직결된다. NAFTA는 단순히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까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전환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보다 ‘경제거래의 전환’(economic transactions diversion)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NAFTA가 1994년부터 설립되므로 어떻게 하면 국제거래의 자유화에 역행하지 않을 것인가에 많은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¹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미 이 글에서 인용한 저서나 논문들의 대부분이 현 NAFTA案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국제경제에 어느 정도 피해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한 경우는 없으며 그 보다는 城內 3개국의 이해에만 집착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 G.C. Hufbauer and J.J. Schott (1992, 1993)를 비롯한 미국내 대다수의 저자가 NAFTA의 설립이 城內 거래의 자유화 및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GATT의 원칙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EU가 탄생할 때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설사 事前 또는 事後的으로試算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가설 자체에 논란을 빚을 수 있으며 NAFTA당사국들이 구체적으로 GATT규정(특히 XXIV조)을 충족시킨다고 고집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여러 기회에 지적하

(10) 그중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Princeton University and Korea Economic Institute(1993)에서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었음.

였듯이 [金世源(1993, p. 74 이하)] 이에 대한 대안은 지역주의를 택하는 국가가 보다 域外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정책을 수행하고 또 GATT의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¹¹⁾

어떤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이든 근본적인 취지는 城內의 경제적 이익에 있으나 문제는 그 과급으로 域外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졌온다는 것이다. NAFTA의 경우 이러한 사실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 특히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域外제국 기업의 城內진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3개국간 자원배분에 왜곡을 가져오므로 오히려 非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先例를 남기기 때문이다. 여하간 앞으로 NAFTA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며 또 反덤핑세 및 상쇄관세를 비롯하여 회원국들이 지적소유권, 환경정책 등 깊은 의미에서 비판정책의 채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UR의 성공적인 타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역주의의 부정적인 과급을 막는 길은 결국 GATT에 의한 다변주의 준수라고 생각한다. 특히 NAFTA의 일부 내용이 UR에 따른 협정과 충복되므로 NAFTA에 의한 차별대우는 다소 의미를 얻게 된다.

한편, NAFTA의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측면중의 하나는 바로 J. Bhagwati (1992, p. 28 이하)가 지적하였듯이 GATT 비판론자의 입장이다. 즉 NAFTA의 창설에 대한 반발로서 세계경제가 블럭화의 추세를 거듭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NAFTA의 창설이 발표된 이후 中南美지역내 각종 지역주의적 경제 통합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또 아세아·태평양지역내에서도 미국의 입장 여하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보다 구체화될 수도 있다.

아·태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1993년 2월 ASEAN 6개국이 2008년까지 AFTA(ASEAN Free Trade Area)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공동실효관세특혜(common effective tariff preference)의 실현으로서 이 기간까지 실질적인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 말레이지아가 당초 제안했던 동남아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 EAEG)에서 후퇴하여 EAEC案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同案은 미국을 배제한 동남아제국을 그 회원국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회의’(forum)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나 NAFTA의 발전에 따라서는 배타적인 지역주의로 전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현재 클린턴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태평양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

(11) GATT는 1989년 이후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을 설치·운영하여 오고 있다.

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비록 NAFTA가 발족한다 하더라도 APEC을 강화함으로써 우선 北美제국과 아·태지역을 대단위경제권으로 묶고 앞으로 中南美제국을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5개국으로 구성된 APEC은 1993년 11월 멕시코, 그리고 파루아·뉴기니가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1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APEC의 발전전망은 어떠한가?

우선 APEC이 EU나 NAFTA와 같은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당초부터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NAFTA가 미국-멕시코와 같이 격차가 큰 경제의 통합으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등 다양한 경지를 더 추가하여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또는 정치·경제체제적 제제약을 고려한다면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라는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APEC은 보다 小GATT나 小OECD와 같이 무차별주의, 다변주의 및 개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협력기구로 발전하되 실질적으로 경제거래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이미 일본도 개방경제협의체(open economic association)라는 구식적 입장표명을 통하여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통하여 APEC의 발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두엇보다도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이외에도 NAFTA의 설립에 따르는 부정적인 학습을 극복한다는 데 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EU에 대한 현상권(bargaining power)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간파할 수 없다.

1989년 발족한 APEC는 그간 단순한 하나의 '모임장소' (forum)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1992년 봉곡회의에서 비로소 상설사무국(secretariat)의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비로소 기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93년 11월 미국의 씨애틀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위원회(Trade-Investment Committee)가 설치됨으로써 域內거래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그 이외, APEC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단순히 경제협력 및 무역증대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및 정치협력의 문제도 다루어진다는 데 있다. 비록 이념대립이나 병전종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지역내에서 무역충돌가능성이나 세력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고도 생각되며 또 이 부문에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어 하나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여하간, NAFTA의 체결을 계기로 국제경제질서, 보다 좁게는 아·태지역내 경제·안보 질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어찌보면 국제경제질서는 종전의 3국체제에서 EU경제권과 미·일을 중심으로 한 아·태경제권의 형성에 따라兩大軸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7. 結論—韓國의 NAFTA市場進出戰略

이제껏 NAFTA의 내용, 北美경제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 NAFTA의 실현전망 및 국제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산업별 영향을 종합하면서 미시적 측면에서 대응전략도 함께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NAFTA의 발전에 대비하여 어떤 접근을 택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열거하고자 한다.

NAFTA가 지난 1994년 1월부터 출범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일부만이 즉시 발효하며 대부분 最長 15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현되므로 여기서 논하는 대안 역시 중장기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대안의 성격에 따라 그 효과를 즉시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차분히 수행해야 된다. NAFTA의 내용이 수행과정에서 더 보완되어야 하므로 한국측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전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한다.

(1) NAFTA에 대한 진출전략이 국제경제의 변화에 따르는 대응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적 응용에 지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국내 경제적 잠재력, 지속적 성장 및 높은 경쟁력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하여 NAFTA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독립된 대외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내경제에서 우선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론이기는 하나 국내 적극적인 산업정책 및 구조조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가 없이는 결코 NAFTA내 시장기반을 확립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과거의 적접적인 특혜정책과는 달리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稅制·금융면에서의 간접적·유인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R&D 개발 및 特化(specialization)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새로운 산업정책의 취지는 단순히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특정첨단부문의 육성과 함께 기존 비교우위산업의 생산성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화·정보화에도 그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기업의 NAFTA진출이 단순히 국내 임금상승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만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에 따라 현지(미국,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얻을 수 있는

비교우위소수의 이점을 얻고 또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때 비로소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2) 이 기회에 정부는 국제경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관련하여 對 NAFTA 경제외교를 좀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부시정부는 NAFTA를 중심으로 중남미경제를 자유무역에 기반을 둔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클린턴의 구상을 좀더 다른 것 같다. APEC이라는 테두리를 활용하여 우선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경제는 물론 정치적·안보적 결속을 다지는 데 그 비중을 두고 있다. 그가 한국 및 일본을 순방하였을 때 공언한 내용은 물론 씨애틀의 제5차 APEC정상회담개최 제의가 단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미국은 무역·투자위원회(TIC) 설립을 위한 기본협정(APEC/TIF)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APEC이 비록 단시일내 FTA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對 NAFTA 및 중남미정책은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미국은 新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라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하고 일본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하나의 경제권으로 점차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보다 경제적 이해가 밀접한 동아시아 지역을 포용하고 일본주도의 위험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NAFTA에 의한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은 이러한 구상에서 하나의 小지역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또 멕시코 역시 가입함으로써 APEC은 NAFTA에 의한 배타주의·차별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정적 시장의 확보, 협상권의 강화는 물론 NAFTA에 의한 보호주의적 추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APEC의 강화에 적극 동조할 필요가 있다. 北美 3개국과 개별적인 협상도 중요하거니와 다변적인 테두리내에서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차별대우를 저지하고 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APEC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종합한다면 NAFTA의 부정적인 파급을 막기 위한 경제적 외교의 중점을 WTO체제의 강화와 함께 APEC의 발전에 두어야 한다. 일부 NAFTA의 가입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 또는 실질적인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3) 일부 선진국이 그러하듯이 NAFTA의 설립을 계기로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와 경합관계 또는 멕시코내 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한 對美수출 등 국내기업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시각이 그 나름대로 一理는 있다고 본다. 특히 전기·전자를 비롯한 가전제품, 의류·섬유류, 컴퓨터, 반도체, 통신기기 및 자동차 및 부품 등 한국경제의 특화부문에 있어서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제국에 대한 직접투자 및 기술수출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보호주의적 北美원산지규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의 수출과 함께 부품·소재의 전문생산업체인 중소기업과 동반진출도 타당한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접근도 추가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관련업체는 좀더 총체적인 세계화 전략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비전 아래 北美 진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北美시장을 하나의 커다란 시장으로 발전한다는 전망 아래 3개국 시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멕시코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캐나다시장도 동시에 동일선상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로, 미국과의 산업제휴를 그 이외 캐나다 및 멕시코진출과 연결시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클린턴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경제협력대화’(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 DEC)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양국간 ‘산업동맹’(industrial alliance)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통하여 기타 2개국에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NAFTA의 체결 자체가 시장통합에 의한 大市場의 형성이 가져오는 동태적 이익의 실현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기업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기술, 신제품개발, 자동화·정보화 및 경영기법의 습득 등을 北美현지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자체를 국내 진출기업의 전반적인 세계화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촉진을 도울 수 있도록 상호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적하였듯이 WTO 체제의 강화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NAFTA가 초래 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예로 원산지제도, 反덤핑 및 상쇄 관세제도 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정책 등 UR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어 NAFTA에 의한 피해는 다소 완화되었다.

(4)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거나 와 기업의 대외진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현지를 잘 모르고 정보의 입수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시장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거나 캐나다 및 멕시코시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예로 멕시코의 경우, 경제·산업동향과 같은 피상적인 측면에 관한 사항은 쉽게 알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역사, 문화, 사회관습, 전통, 그리고 좀체는 경제제도·정책 등 방대한

자료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단순히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이 결코 중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와 함께 국내 관련기관들의 정보수집·분석·제공의 기능이나 조직도 보다 효율화되어야 한다. NAFTA의 가조인을 전후로 경제기획원, 상공부는 물론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자료를 작성·제공하거나 설명회를 갖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 상호간 정보교환, 정책조정 또는 토론회 등을 갖는 예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기관의 연구·조사 업무 및 기능도 상호조정이 필요하며 보다 협업체제를 통하여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 일부 기관이 수행하고 있듯이 심도있는 국별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고 나아가 디시국 산업분석도 실화되어야 한다.

(5) 끝으로, 일반론이기는 하나 기업의 전문화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국경제의 약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영전력도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로 OEM 수출을 탈피하여 자체 고유의 상표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마케팅전력, 홍보, 판지 유통조직의 활용, 현지기업과의 협조체제 등 제3면에서 전반적인 혁신의 노력은 NAFTA의 결성에 따르는 北美市場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다.

서울大學校 國際經濟學科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 880-6387

팩시 : (02) 888-4454

〈부록〉 NAFTA의 주요내용

1992년 8월에 발표된 기본 협정문은 NAFTA에 대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고 협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어구에 대한 논의들이 남아 있고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적인 협정문이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기본 협정문이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이므로 이것을 토대로 각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협정문의 내용을 제 1차 실무협상에서 제시된 실무 주제분과와 세부 분과의 기준에 준하여 나누었다. 아울러 1989년 발효된 미-캐나다 협정의 주요내용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市場接近 分野

1.1. 關稅 및 非關稅 障壁

먼저 관세철폐는 모두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협정발효와 더불어 즉시 철폐되는 품목으로서 카테고리 A로 분류되며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 경우, 미국관세율표상에 나타난 7,300여개 품목이 여기 포함하는데 이중 4,200 품목은 기존의 GSP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들이다.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 관세율 표에 나타난 5,900품목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멕시코 수출의 각각 43%와 41%를 차지한다.

2단계는 협정발효후 5년까지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으로서 카테고리 B로 분류되며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율표상에 나타난 1,200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멕시코 관세율표상에 나타난 2,500품목이 여기에 해당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대멕시코 수출의 각각 18%, 19%를 차지한다.

3단계는 협정발효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서 카테고리 C로 분류되며 미국의 700품목, 캐나다의 1,600품목, 멕시코의 3,300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4단계는 협정발효후 15년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품목들로서 카테고리 C⁺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미국의 민감 수입품목으로서 과일, 야채, 저가 유리제품, 고무화 및 세라믹 타일 등이 속해 있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 협정국은 뷔타, 수입인증과 같은 수량제한 및 수입제한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은 사람, 동식물의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며 농산물, 자동차, 에너지, 석유 등의 교역에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1.2. 原產地 規定 및 關稅還給

협정문에는 각 품목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관세 카테고리상의 변경(change of tariff categori)으로 많은 상품이 이 기준에 의해 원산지규정을 정의하고 있다. 둘째는 현지 부품 조달률(local contents rules)로서 자동차, 철강제품, 신발 등에 적용된다. 셋째는 특정품목을 현지부품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서 칼라 TV의 경우 픽츄어 튜브를 섬유의 경우 원사를 북미산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환급(duty drawback)에서는 7년간의 과도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관세환급이 중요시된 이유는 비현지기업에 불공평한 이점을 주게되기 때문이다.

1.3. 政府調達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은 연간 1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멕시코의 PEMEX(국영석유회사) 및 CFE(국영전기회사)의 조달에 명료한 입찰 및 심사조건 적용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 멕시코는 이들 부분에 대한 정부조달을 일정 최저한도 요건을 적용하여 협정발효 즉시 50%까지, 8년 이내에 70%까지, 10년내에 100%까지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연방기관에 대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 금액 5만달러 이상의 구매에 대해, 건축의 경우 650만달러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허용하고, PEMEX와 CFE같은 연방정부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2만 5천달러, 8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간에는 미-캐나다 협정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2만 5천달러 이상의 규모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1.4. 農產物

농산물 부분은 3국간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물론 미국과 캐나다간에는 미-캐나다 협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NAFTA에서는 미국은 자국의 3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멕시코로 하여금 협정발효 즉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일부 부분에는 이러한 수입허가제를 과도기간 동안 관세율쿼터(tariff-rate quotas)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멕시코간 농산물 교역의 50%에 해당하는 상품은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며 나머지 대부분의 관세는 5년이내에 철폐된다. 단 미국은 설탕, 오렌지, 브로콜리, 토마토, 아스파르가스, 꽃양배추 부문에 대해, 멕시코는 옥수수, 낙농품, 식용콩 부문에 대해 15년에 걸친 단계적 개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설탕, 가축, 계란, 낙농 부문을 계속해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3국 모두 특별 세이프가드가 처음 10년동안 적용될 수 있다.

1.5. 自動車

자동차 부문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협상과정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는 65년 이후부터 실시되어 왔던 미국-캐나다 자동차협정(Auto Pact)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제3국의 멕시코 내 생산시설 설립에 따라 미국시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지부가가치를 발생시킨 멕시코산 자동차의 대미수출 범람을 막기 위한 의도가 반영

되어 있다. 즉 자동차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현지부품조달률을 협정발효 즉시 50%, 1998년부터 55%, 2002년부터 62.5%로 올리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지부품조달률을 협정발효 즉시 50%, 1998년부터 55%, 2002년부터 60%로 올리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현지부품조달률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부품의 가치를 단계적으로 추적하는 순비용 계산방식(net cost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 협정발효 직후 미국은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며 경트럭의 경우 관세율을 25%에서 10%로 견감하며 5년의 과도기간을 둔 후 완전 철폐한다. 멕시코는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협정발효 직후 10%로 시작하여 10년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완전 철폐되며 경트럭의 경우는 5년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완전 철폐된다. 중기트럭, 트레일러, 버스의 경우는 3국 모두 10년의 과도기간을 갖는다. 캐나다도 멕시코의 관세철폐 계획과 같이 최장기간의 관세철폐를 이행하게 된다.

비관세장벽의 경우 멕시코는 협정발효후 10년내에 승용차와 경트럭의 자유수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수송차량의 경우 5년이내에 폐지하게 된다. 중고차수입 자유화는 환경오염과 안전문제에 해당하는 규정만 준수될 경우, 협정발효 16년째부터 시작하여 25년째까지 완전자유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6. 纖 維

멕시코는 협정발효 즉시 현 석유 어페럴에 관한 관세를 1/2수준으로 인하하고 나머지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퀴타를 10년내에 철폐하기로 하되 처음 5년간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퀴타를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NAFTA는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때 수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석유분야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원산지 규정에서는 대부분 어페럴의 경우 북미산 원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에 너 지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석유산업 개방 및 미국 기업참여 그리고 투자문제에 대해 설득작업을 했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멕시코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소유권 및 탐사, 판매, 보급 등을 계속해서 자국 협약상에 규정된 대로 국가독점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국영석유회사인 PEMEX와 미국과 캐나다의 석유부문 서비스 기업간의 보너스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19개 석유화학 부문중 14개 부문에 대한 멕시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간에는 미-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상의 에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NAFTA와 차이가 있다면 미-캐나다 협정에서는 에너지 부족사태시 상호 공급의무를 갖지만, NAFTA에선 이러한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2. 通商規定

2.1. 세이프가드

수입의 증가가 동일 분야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취할 수 있는 임시 조치인 세이프가드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역내간 세이프가드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세이프가드이다.

역내간 세이프가드는 일국이 관세철폐과정을 중단하거나 협정 발효 직전의 수준으로 관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정 과도기간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영향받는 수출국에게는 의무적 보상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상은 타격받는 가치만큼 수출국에게 상업적 구상무역의 형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세이프가드는 일국이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역내국에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역내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는 역내국이 관련품목에 상당한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상위 5대 공급국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이다.

2.2. 反덤핑 및 相計關稅

협정은 독립적인 양국간 쌍무패널을 구성하여 각국 행정당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재신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은 패널의 효과적인 재심을 위하여 각국의 국내법이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패널의 판정, 재심절차상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이의조정 절차와 역내 특정 국가의 국내법규 적용으로 패널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패널을 수입국이나 수출국중 어느 한 쪽이 수입국 국내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권한을 가진 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패널 재심을 요구할 경우 국내 사법적 재심 절차를 대신하여 처리한다. 패널은 5인으로 구성되며 판결시에는 반드시 수입국의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 패널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국가가 3인의 전현직 판사로 구성하는 이의조정위원회 (Extraordinary Challenge Committee)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정하면 패널의 판정은 무효화 된다. 그리고, 각국의 패널절차를 국내법 적용으로 방해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특정국이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3. 規格 및 基準

각국의 표준체계는 암묵적으로 무역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NAFTA에서도 표준체도의 작성, 적용을 좀더 일관성 있게 하도록 몇 가지 규정을 담고 있다.

첫째, 기술 표준화 제도와 이와 관련된 조치의 이행에 대한 규범들은 한 국가가 다른 역내국에서 수입한 생산물에 불리한 대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 표준체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세째, 협정국들은 상이한 표준체도의 일치를 위해 조정 규범을 만든다. 네째, 표준체도의 개정시 변경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섯째, 완벽한 표준체도의 운영을 위해 표준체도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서 비 스

3.1. 一般原則

NAFTA의 서비스교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현지 주재(local presence) 원칙 등으로 GATT의 일반원칙과 부합되고 있다. 현지주재 원칙이란 협정국이 그 협정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국내 서비스의 제공을 조건으로 자국내의 주재원, 사무소, 지점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기업을 설치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협정국 및 자격증의 상호 인정의 측면에서 보면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역내국간에 자동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3.2. 金融·保險 및 其他 서비스

협정이 따르면 멕시코는 은행 및 보험기업 진출에 대한 제한을 200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증개회사에 대해 10년 이내에 철폐하여 향후 100% 단독소유 기업이 비차별적인 내국민 대우하에서 설립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 관련 규정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3국의 기업에도 적용된다.

협정발효 처음 1년후에 미국은 멕시코 은행산업의 8%까지, 7년 이후에는 15%까지 소유 할 수 있다. 증권의 경우 발효 직후 10%까지 이후 6년동안 20%까지, 그 이후 4년동안 30%까지 진출을 허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제한을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멕시코는 멕시크 기업과 합작 투자한 기존 미국 및 캐나다의 보험회사의 경우 1996년까지 100% 단독소유를 그리고 신규합작 투자시에는 1998년까지 과반수 이상 소유를 허용한다.

기타 부문에서는 외국인 법률 컨설턴트 및 엔지니어에 대한 상호 우호적인 협정 및 협약

에 대한 모든 시민권 요건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3.3. 陸上運送

협정 발효와 함께 미국은 멕시코의 전세 및 여행버스에 대해 자국 국경시장에 대한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그 동안 트럭 및 버스 영업을 중지시켜온 조치를 개정하며 이에 대해 멕시코도 미국과 캐나다의 전세 및 여행버스에 대한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

협정 발효 3년 후 미국은 멕시코 버스회사들이 국경간 버스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멕시코 또한 캐나다와 미국 버스회사에게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협정 발효 6년 후 3국은 협정국 트럭회사에게 자국영토 전역에 걸친 접근을 인정한다. 그리고, 협정 발효 7년 후 멕시코는 버스회사 및 국제화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럭회사에 대한 캐나다 및 미국의 자국투자를 51%까지 허용하며 동시에 미국은 멕시코 버스회사에 대한 미국내 영업허가 취득 금지조항을 철폐한다. 마지막으로 발효 10년 후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의 투자를 100% 허용한다.

철도 서비스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철도회사는 자유로이 멕시코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터미널을 건설하거나 소유하여 철도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 항만의 경우에는 투자의 100%를 허용한다.

3.4. 通 信

협정국은 개인회선 임대, 공공 통신망에의 터미널, 개인회선과 공공통신망의 상호연결 등 공공 통신망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방송국이나 케이블시스템에 의한 라디오, TV프로그램의 유통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협정국은 타 협정국 개인이 공공 통신망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을 맡은 것을 허가하지 않거나 민간 통신망의 운영자가 공공 통신망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4. 投 資

투자규정은 주로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개방 및 제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멕시코는 수출이행요건 및 자국산 부품 사용조건을 폐지하고 미국, 캐나다 국민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고 있다. 협정의 투자규정상의 혜택을 받는 투자들에게는 국적이 중요한 의미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유럽이나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좋은 경우 미국기업의 자회사로서 멕시코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협정은 역내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더불어 통화의 자유화를 보장하고 역내

기업 물수시 이를 보호하는 한편 투자국과 투자유치국간 투자분쟁발생시는 국제적인 수준의 중재를 통해 이를 보호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투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로서 캐나다는 미-캐나다 협정에 의한 스케줄에 의거하여 일정한도 규모이상의 역내기업 투자허용시 투자심사를 실시하며, 미국은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될 경우 제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知的所有權

지적소유권 분야는 미-캐나다 협정 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번 NAFTA에서 보다 강화되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기존의 특허, 저작권, 상표, 무역비밀 및 서비스마크보호를 확대하는 등 국내법의 보호강화 조치가 있게 된다. 멕시코는 외국인 등록특허에 대해 파리 협약에 의해 20년동안 보호하고, 저작권에 해당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음반에 대해서는 베른협약요건을 준수하여 50년의 보호기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업체들은 멕시코정부 소유 병원의 조달에 응찰할 수 있게 되고, 캐나다는 오랜동안 미국의 제약상품회사와 분쟁의 소지를 초래했던 허가요건을 철폐하게 된다.

6. 紛爭解決

분쟁해결은 대개 3단계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협의-무역위원회 회부-중재가 바로 그것이다. 분쟁이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30~45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국의 요청에 따라 무역위원회(Trade Commission)가 개최되는데, 3국의 통상장관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무역위원회를 통해서도 당사자에게 모두 만족스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은 협정국들의 합의를 거쳐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분쟁 당사자국들은 패널보고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패널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만약 이에 실패한다면 제소국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분쟁에 따른 피해상당액만큼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環境保護

환경문제가 NAFTA에서 대두된 이유는 첫째, 멕시코의 환경 및 보건기준 시행미흡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이점을 갖게 되고, 둘째, NAFTA가 미-멕시코 국경지대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내 환경보호론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정국간 환경보호 노력을 증대시킨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환경 관련조항이 협정전반에 걸쳐 아래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규정된다.

첫째, 회피 동식물, 오존파괴물질 및 유해 폐기물 등과 관련된 특정 국제환경협약하의 의무는 NAFTA협정상의 관련 규정보다 우선한다.

둘째, 협정국은 자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동식물, 건강 및 환경보호의 수준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러한 보호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표준 및 위신, 절역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세째, 협정국은 사람, 동식물, 건강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자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목적으로 이러한 보호기준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네째, 환경기준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관련 당사국은 기타 무역협정상의 타결절차에도 불구하고 NAFTA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한 국제 환경 협약하에서 취해진 무역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환경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구성된 패널은 환경전문가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분쟁발생시 제소국은 상대국이 취한 환경조치가 NAFTA협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參 考 文 獻

경제기획원·상공부(1992)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영향과 대응방향』, 1992. 9.

金世源(1993)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選擇』, 대한교과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金尙謙)(1993) :『NAFTA의 출범과 미국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멕시코의 경쟁력비교』, 1993. 8.

_____ (1992) :『오늘의 세계경제』, 1992. 9. 1.

_____ (1993) :『오늘의 세계경제』, 1993. 6. 22.

대한무역진흥공사(1991) :『북미통상정보』 1-3.

_____ (1992) :『NAFTA영향 및 대응방안세미나』, 1992. 9. 24.

_____ (1993) :『미주통상정보』 5-9.

세종경제연구원(1992) :“세계경제의 불력화와 한국의 선택,” 삼도지움, 1992. 10. 3.

- 鄭在永(1992)：“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開放的地域主義,” *국제경제학회·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논문*, 1992. 11. 25.
- 한국무역협회(1992a)：『NAFTA기본협정문』, 특별부록, 1992. 8. 18.
- _____ (1992b)：“NAFTA체결의 영향과 대응방안,” *통상 제92-10, 설명회자료*.
- 한국무역협회·산업연구원(1992)：『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1992.
- 1.
- 한국수출입은행(1992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1992. 3. 28.
- _____ (1992b)：『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1992. 6.
- 한국은행(1992a)：『北美자유무역지대(NAFTA) 추진과 우리의 대응방안』, 1992. 1.
- _____ (1992b)：『주간해외동향』, 1992. 8. 20.
- _____ (1993)：『해외투자법인현황』.
- Bergsten, C.F., and M. Noland (ed.) (1993)：*Pacific Dynamism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 Bhagwati, J. (1992)：*Trading Choices: The Americas or The World?*, University Lecture, Columbia University, Nov. 16.
- de la Torre, A., and M.R. Kelly (1992)：*Regional Trade Arrangements*, IMF.
- de Melo, J. and Panagariya(1992)：*The New Regionalism in Trade Policy*, World Bank.
- Diebold, W. Jr. (ed.) (1988)：*Bilateralism, Multilateralism and Canada in U.S. Trade Policy*, Ballinger Publishing Co.
- GATT(1992)：“Basic Instruments and Selected Documents,” Supplement No. 38.
- Greenaway, D., T. Hyclarly, and R. Thomton (ed.) (1989)：*Economic Aspects of Regional Trading Agreements*, Harvester Wheatsheaf, New York.
- Hufbauer, G.C., and J.J. Schott(1992)：*North American Free Trade: Issues and Recommendation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 _____ (1993)：*NAFTA: An Assessment*, I.I.E.
- IMF(1992)：*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Nolle, D.E. (ed.) (1990)：*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Implication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New York University Press, N.Y.
- Princeton University and Korea Economic Institute(1993)：“AFTA After NAFTA?” Seminar Paper, Sep. 2-3.

- Schott, J.J. (1993): "Draft Comments for IGE Seminar," Seoul, March 18.
- Schott, J.J., and M.G. Smith (ed.) (1988): *The 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The Global Impac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 USITC (1992): *Economy-wide Modeling of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n FTA with Mexico and a NAFTA with Canada and Mexico*, USITC PUB, 2516.